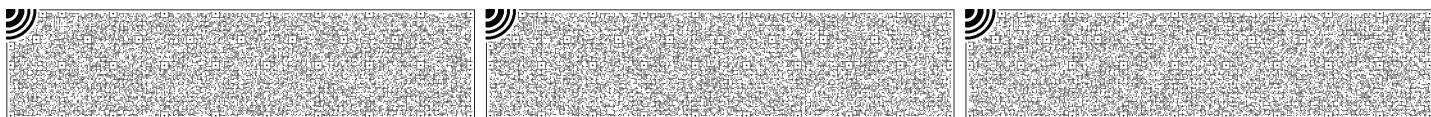


의 결



국민권익위원회



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

의안번호 제2026 - 104호

의 안 명 구조·구급 증명 민원 발급 개선 방안

대상기관 소방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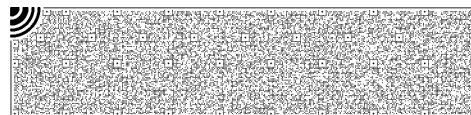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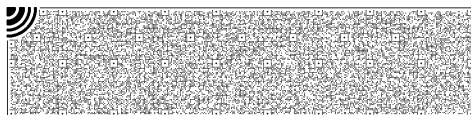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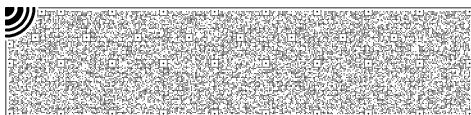
의 결 일 2026. 4. 6.

주 문

「구조·구급 증명 민원 발급 개선 방안」을 별지와 같이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권고한다.

이 유

별지와 같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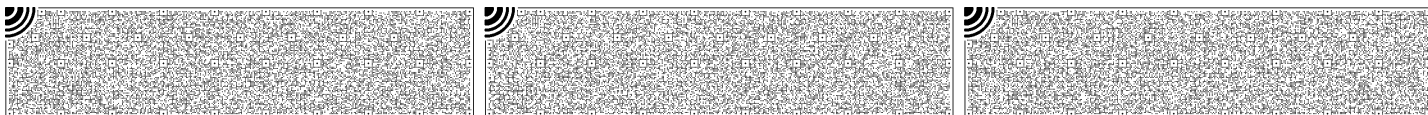
【별지】

구조구급 증명 민원 발급 개선 방안

2026. 4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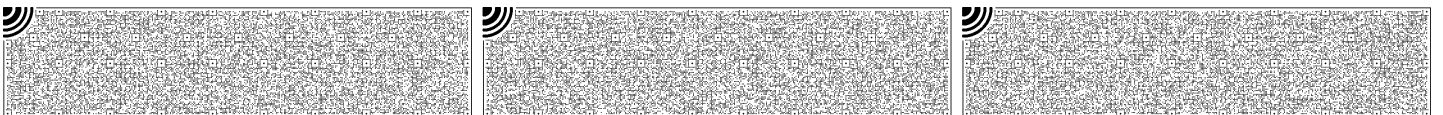
국민권익위원회



|| 목 차 ||

I. 추진배경	1
II. 일반현황	2
III. 문제점	8
1. 구조구급 증명 민원 처리 방식 제각각	8
2. 구조구급 증명 민원 전자발급 체계 미비	10
3. 이중 민원 처리에 따른 국민불편 및 행정력 낭비 ..	12
IV. 개선방안	15
1. 구조구급 증명 민원 처리 체계 일원화	15
2. 구조구급증명서 전자발급 시스템 구축	15
3. 구조구급증명서 공개정보 강화	16
V. 조치사항	17

※ 붙임 : 관련 법규



I. 추진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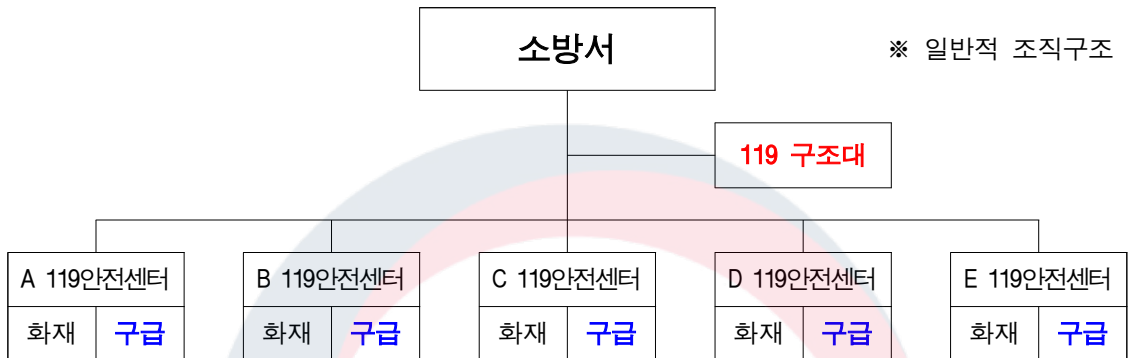
❖ 추진 근거 : 「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7조

- 국내 각종 사고, 응급상황 등에 따른 소방당국의 구조 및 구급활동 건수는 한 해 약 250만 건에 달함
 - ※ '25년도 전국 구급이송 건수는 173만 건, 구조활동 건수는 57만 건 기록
- 구조·구급 수혜 국민들은 산재처리, 보험청구, 법률분쟁 등에 사용하기 위해 소방관서에 '구조·구급 증명' 발급 민원 신청
 - ※ (민원 청구) 구조·구급증명서, (정보공개 청구) 구조·구급활동일지
- 정부를 비롯한 대부분 공공기관이 '정부24' 등을 통해 기관 방문 없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,
 - 구조·구급 이력을 증명하는 '구조·구급증명서'의 경우 현재도 국민이 직접 소방관서를 방문하여야 발급이 가능
- 또한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(20.4월) 및 소방청의 구조·구급 업무시스템 일원화* 운영에도 불구하고, 시도 소방관서 민원처리 연계는 부족
 - * (구급) 119구급스마트시스템, (구조)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
- 특히, 시도 소방관서별 민원처리 방식 등이 제각각으로 사건·사고로 경황 없는 국민들이 민원서류 발급에 더 큰 어려움 발생
- 이에 구조·구급 증명 민원의 체계적 민원처리 제도를 마련하고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발급방식을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

II. 일반현황

□ 소방대(119) 현장 활동 종류

- 일선 소방서의 화재, 재난, 사고, 응급상황 등에 따른 소방활동 업무는 통상 화재진압, 구급 및 구조활동으로 구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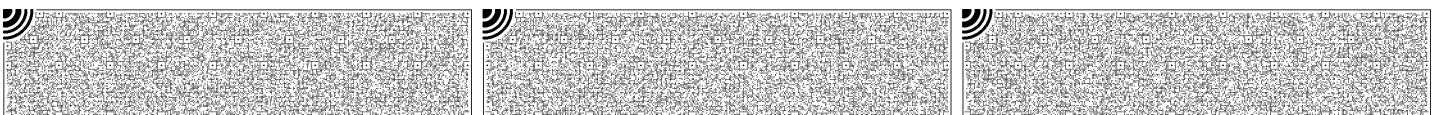
- **(화재진압)** 소화할 필요가 있는 연소 현상에 대한 진화, 조사 활동
 - **(구조)** 화재, 재난·재해 및 테러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
 - **(구급)**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,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
- 최근 5년간 전국 구급 이송 건수는 한 해 평균 185만 건이며, 구조 건수는 71만 건에 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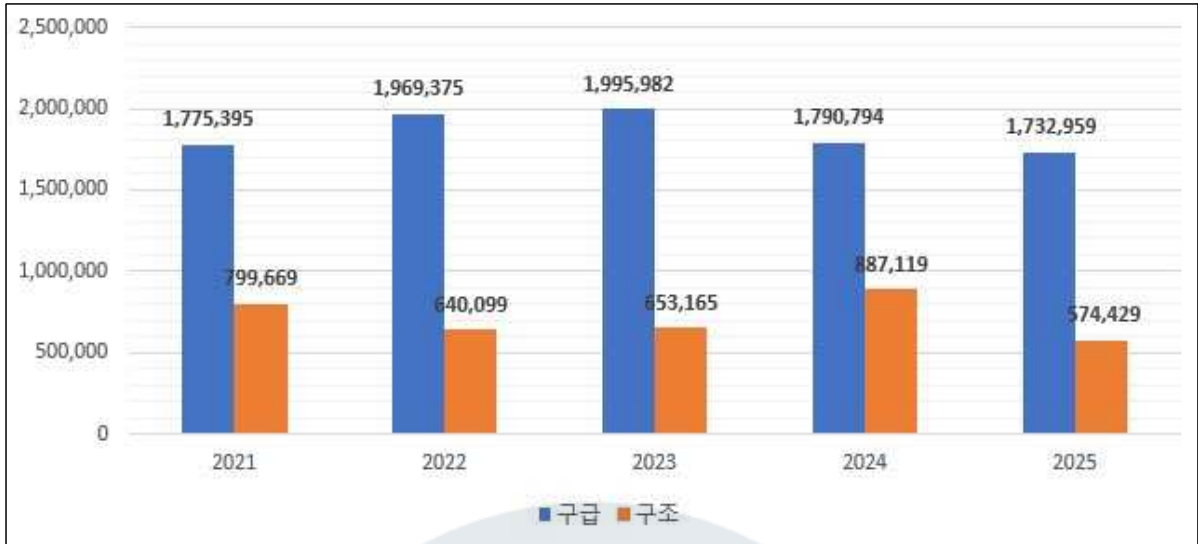
<'21년 ~ '25년 전국 구조·구급활동 현황>

(단위 : 건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
구급 이송	1,775,395	1,969,375	1,995,982	1,790,794	1,732,959
구조 처리	799,669	640,099	653,165	887,119	574,429

※ '26. 1월 권익위 실태조사(구급·구조 출동 건수 및 총 인원은 별도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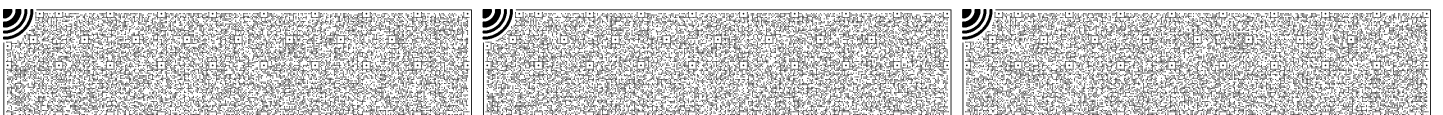
□ 소방활동 증명 민원 종류

- **(화재증명원)** 소방관서 화재조사 결과에 따른 화재 발생 장소·일시, 피해 대상과 내용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, 대상 화재와 관련된 이해 관계인 등의 신청에 따라 발급
 ※ 「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「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
- **(구조·구급증명서)** 소방관서 구조·구급활동의 수혜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로, '당사자, 보호자,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'의 신청에 따라 발급
 ※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9조

< 구조·구급활동일지 >

- 단순히 구조·구급 수혜 대상임을 증명하는 '구조·구급증명서'와 달리, 소방대원의 구조 및 구급활동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기록으로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

※ 증명서 발급 형식이 아닌, 당사자의 '정보공개 청구'에 의해 발급



□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현황

- (온라인 민원시스템) 정부는 국민의 각종 민원에 대한 접근 편의성 증진, 빠른 민원처리 및 행정력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전자민원처리시스템 운영
 - 국민 일상과 밀접한 중앙 및 지방행정, 세제, 복지, 노동,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사용

<주요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>

운영기관	시스템명	서비스 내용
행정안전부	정부24	각 분야별 민원서류 신청·발급, 신고 등
국민권익위원회	국민신문고	전 공공기관 대상 청원, 질의·답변 등
국세청	홈택스, 위택스	국세 및 지방세 납부, 열람·증명 등
보건복지부	복지로	분야별 복지서비스 신청, 신고 등
고용노동부	고용24	채용, 취업, 실업급여, 직업능력개발지원 등
법원	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	가족관계, 혼인, 출생, 입양 신고 등
	인터넷등기소	개인 및 법인 부동산 열람·증명, 등기신청 등

※ 이외 경찰민원포털(경찰청), Q-Net 및 노동포털(고용노동부), e-보건소(보건복지부) 등 민원 분야별 해당 기관에서 온라인 포털 운영

▶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12조의2(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·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(이하 “전자민원창구”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(대표 민원포털) '정부24(www.gov.kr)'는 정부 정책홍보와 각종 민원



처리를 통합한 대표 온라인 민원시스템으로, 기존 '민원24'를 확대·개편하여 '18년 7월부터 운영중

-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대상 국민 수요가 많은 약 500여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직접처리 또는 해당 기관과 연계 서비스 제공
- 국민들은 기관 방문없이 PC나 모바일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민원 서류를 신청·발급 받을 수 있고, 주요 정책정보 및 맞춤형 민원 서비스 안내 등을 통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

<‘정부24’ 민원포털 서비스 현황>

(단위 : 서비스 항목 수)

구 분		제공 항목	주요 서비스
민원처리	직접처리	322	주민등록 등·초본, 토지·건축물 대장, 납세·사업자 증명서, 대학교 졸업·성적 증명서 발급 등
	기관연계	145	'고용24, 복지로, 노동포털' 등 주요 분야별 민원사이트와 연계
민원안내		11,752	공공부문 각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홍보

<최근 9년 서비스 이용 통계>

(단위 : 건)

	2017	2019	2021	2023	2025
신청건수	61,893,547	79,889,349	158,268,426	157,063,671	185,082,116
발급건수	65,371,705	80,502,975	132,025,035	161,573,468	216,441,651
열람건수	12,994,174	56,640,853	66,911,577	91,421,171	148,891,621



※ 출처 :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서비스(행정안전부, 지표누리)



□ 소방 온라인 민원서비스 현황

○ 구) 소방민원센터(mpss.go.kr/somi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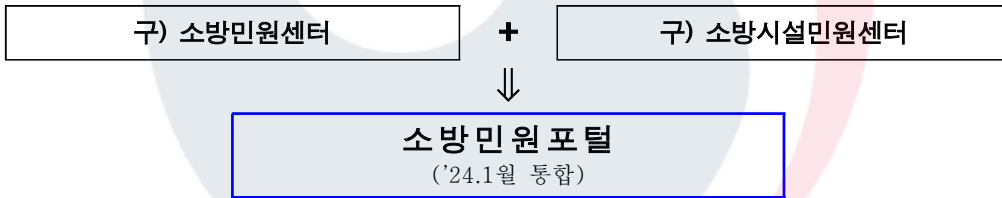
- '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제출', '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' 등의 민원처리를 위한 온라인 민원시스템(운영 : '16. 7월~'23. 12월)

○ 구) 소방시설민원센터(safeland.go.kr)

- '소방시설 설치 기준', '소방 기계·전기분야 화재안전기준', '소방시설 공사업법', '다중이용업소 및 초고층·복합건축물 재난관리' 등의 문의 민원처리를 위한 온라인 민원시스템(운영 : '20. 8월~'23. 12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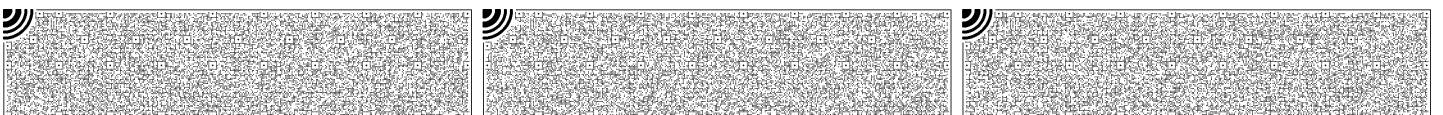
- '24. 1월부터 '소방민원포털(safeland.go.kr)'로 기존 민원처리 시스템 (소방민원센터 및 소방시설민원센터)을 통합하여 방문 민원 20여종을 전산화,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 운영중

<소방민원포털 온라인 민원처리 현황>



구분	민원 대상(총 21종)
자체점검	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 신청, 결과 통지, 결과보고서 제출 등
소방시설공사	소방시설공사 신고, 소방공사감리자 지정·변경 등
화재안전조사	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, 결과통지 /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 등
소방훈련	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결과보고
조치명령	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, 결과통지
소방안전관리자	소방안전관리자(총괄, 보조자) 선임 신청 등

※ 출처 : 소방청 보도자료 및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



□ 전자민원서비스 이용실태

○ **(이용률)** 국민의 10명 중 9명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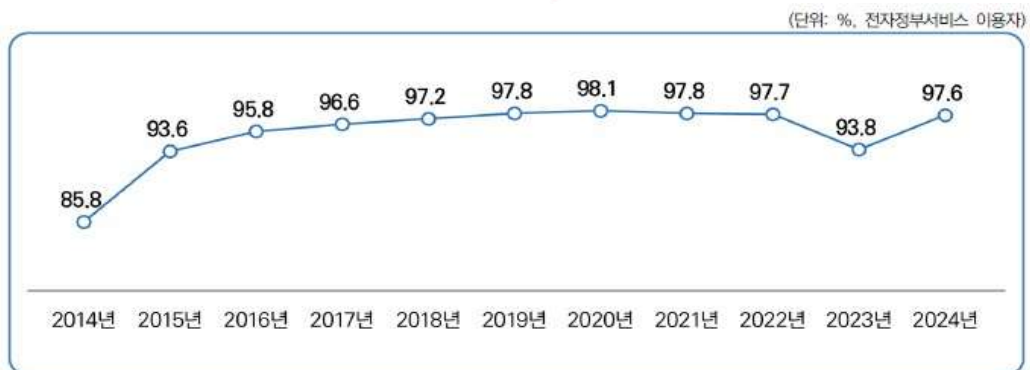
- '24년 기준 만 16~74세 국민 중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비율은 92%, 10년전 대비 약 20%p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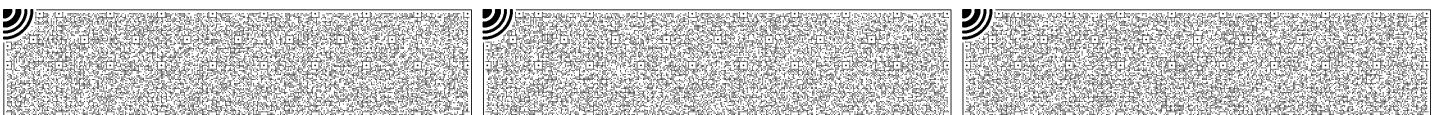
○ **(이용목적)** '행정/민원서류 온라인(발급)·교부'(76.7%), '정보 온라인 검색·문의·조회'(72.0%), '행정/민원서류 온라인 신청(작성)·접수'(63.2%) 등 순으로 나타남

○ **(주요 시스템)**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스템은 '정부24'(89.5%)이며, 다음으로 '국세청 홈택스'(84.6%), '날씨누리(50.7%) 등 순으로 나타남

○ **(만족도)** 서비스 이용 국민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만족하는 비율은 2015년 이후 10년간 평균 96.6%에 달함



※ 출처 :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(2024년_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/행정안전부)



Ⅲ. 문제점

1 구조·구급 증명 민원 처리 방식 제각각

□ 지역 간(시·도) 민원처리 연계 부족

- 일선 구조·구급 업무는 소방청 공통 시스템*을 통해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각 시도 소방본부간 민원업무 연계 불통

* (구급) 119구급스마트시스템, (구조)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

- 구조·구급 활동 시도 소방관서가 아닌 타 시도 소방관서에 증명민원을 신청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직접발급이 가능하나, 일부는 발급을 안해주거나 원 기관의 협조*를 거쳐야 하는 경우 존재

* 전자문서, FAX 등을 통한 민원처리 협의

<시도 소방본부별 '타 시도 증명민원' 처리 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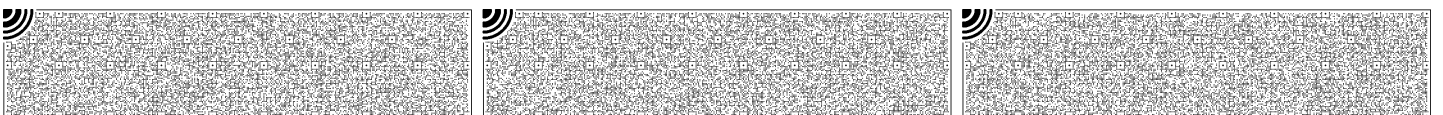
(단위 : 기관 수)

구분	직접발급	원기관 협조	발급불가
구급증명서	12	5	1
구조증명서	1	11	6

※ '26. 1월 권익위 실태조사

□ 민원처리 소방관서 범위 상이

- 관할 기관(소방본부) 내에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소방관서 범위가 시도 소방본부별 제각각
- 내부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, 119안전센터 모두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일부 기관은 소방서에서만 발급하여 민원 불편 야기



- 방문 발급으로 이뤄지는 민원처리를 감안 할 때, 관청 수 가 훨씬 많은 119안전센터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민원 신청을 위한 더 많은 시간 및 비용 소요

< 시도 소방본부별 '증명서 발급 소방관서 범위' 현황 >

(단위 : 기관 수)

구분	소방서 및 119안전센터	소방서만 가능
구급증명서	16	2
구조증명서	14	4

※ '26. 1월 권익위 실태조사

□ 증명 민원처리 규정(매뉴얼) 부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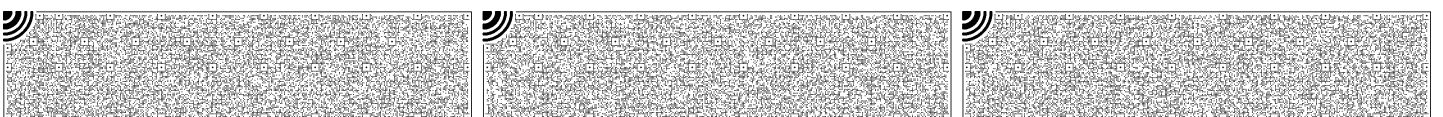
- 증명서 발급 민원처리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공통된 매뉴얼이 없어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 미흡
-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('20.4월) 및 소방청 구조·구급 업무시스템의 일원화에도 일선 소방관서의 행정서비스가 통일되지 못하는 실정
- 소방청 공통 지침도 없으며, 일부 시도 소방본부가 자체 매뉴얼을 갖고 있으나 이마저도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일 뿐 실제 민원처리 행정사항에 관한 지침은 전무

< 시도 소방본부별 '증명민원 처리 지침 또는 매뉴얼' 현황 >

(단위 : 기관 수)

구분	규정(지침)		매뉴얼	
	유	무	유	무
시도 소방본부	-	18	6 (시스템 설명서)	12

※ '26. 1월 권익위 실태조사



2 구조·구급 증명 민원 전자발급 체계 미비

- 전자정부 시대,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'정부24' 등 전자시스템을 통해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
 - ※ (온라인 증명민원) 가족관계증명서, 납세증명서, 병적증명서, 졸업증명서, 운전경력증명서 등 국민 다수가 필요한 공적증명 분야에서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
- 구조·구급 수혜 국민은 산재처리, 보험청구, 법률분쟁 등에 사용하기 위해 구조·구급증명서 발급 필요

<시도 소방본부 구조·구급증명서 발급 현황>

(단위 : 건)

구분	2022	2023	2024	2025
구조·구급증명서	8,550	9,310	9,003	8,116
구조증명	41	49	78	67
구급증명	8,509	9,261	8,925	8,04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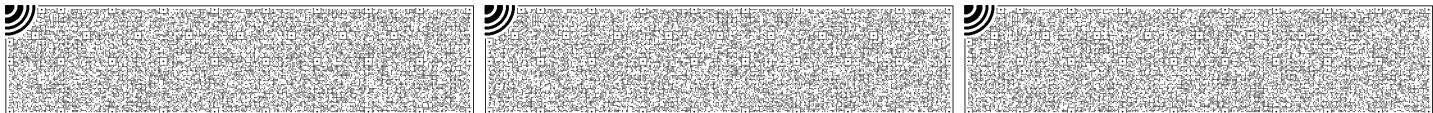
※ '26. 1월 권익위 실태조사

- 그러나, 온라인 발급이 안되 사건·사고로 경황없는 상황에도 직접 소방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발생

※ '화재증명원'의 경우 '정부24'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

<관련 민원 사례>

▣ 삼각지역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, 구급차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송 후 응급 조치를 받은 일이 있음.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구조구급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알아보니, 관할 지역의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요청하라는데 어느 위치의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방문하면 되는지 알수가 없음.(2019.12월 국민신문고 민원)



- 심지어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'구조·구급증명 신청서'(서식)에 '정부24에서 신청가능'으로 표기
- 정부가 시행하지도 않는 제도를 국민에게 수년간 법규로 홍보하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

<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별지 제7호 서식)>

■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4. 12. 20.> 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구조·구급증명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		
신청인	성명	전화번호			
	주소	생년월일			
	용도	구조대상자·응급환자와의 관계 [] 본인 [] 보호자 [] 공공단체 [] 보험회사 [] 기타			
구조대상자 · 환자 인적사항	일련 번호	성명	생년월일	주소	비고

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([]구조 []구급) 증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소방관서장 귀하



3 이중 민원 처리에 따른 국민불편 및 행정력 낭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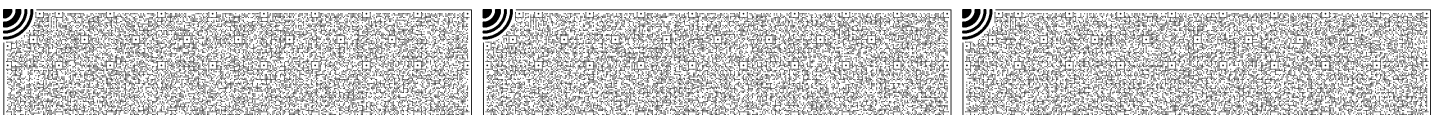
- 국민이 필요로하는 구조·구급 증명 민원은 실제 '구조·구급증명서' 및 '구조·구급활동일지' 두가지 종류로 구분
 - **(증명서)** 구조·구급 대상자 인적사항, 장소, 이송의료기관 등 극히 일부 정보만을 단순 기재, 사실상 구조·구급 대상자 사실만 증명
 - ※ (내용) 대상자 인적사항, 접수일시, 발생장소, 사고 또는 질환명, 이송의료기관, 구조·구급대명, 병원도착시간 등을 간략히 기재
 - **(활동일지)** 구조·구급활동 개요, 사고발생 원인, 발생 장소 및 유형, 환자상태 및 응급처치(구급) 등 상세한 내용 기재
 - ※ (구급) 활동 개요, 환자증상, 장소, 환자발생유형, 환자평가, 응급처치, 의료지도 내용, 환자이송 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포함
 - ※ (구조) 활동 개요, 사고장소, 사고원인, 범죄사항, 조치사항, 동원 장비·인력, 구조인원, 구조실적, 장애요인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포함
- 최근 4년간 발급현황을 볼 때, 민원인은 구조·구급 상황 증명을 위해 '증명서' 보다 자세한 기록이 있는 '활동일지'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약 3배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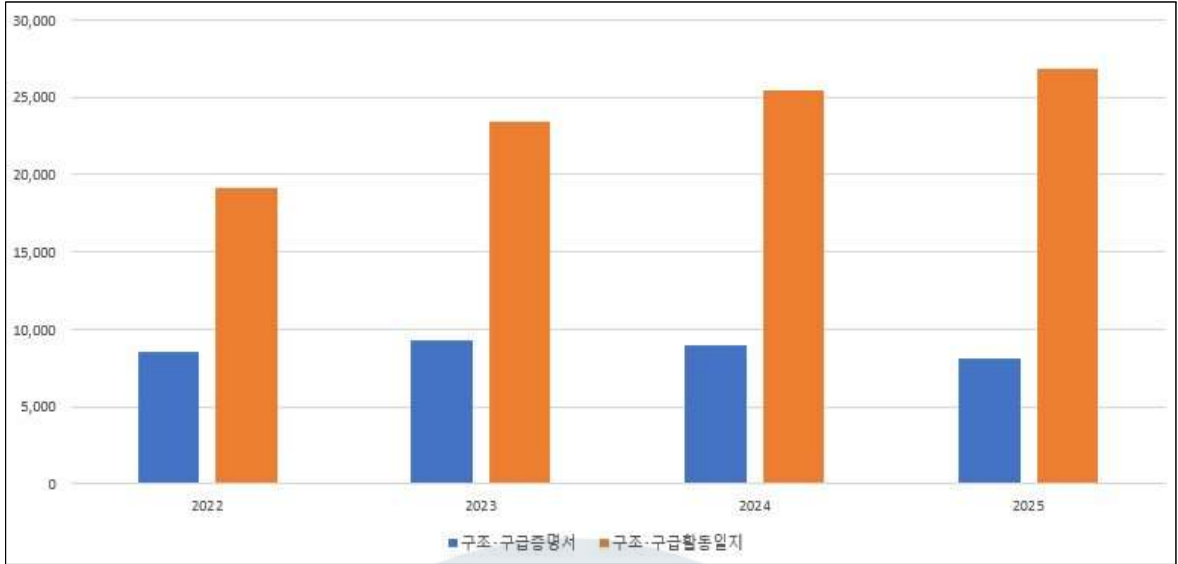
< 시도 소방본부 구조·구급증명서 및 활동일지 발급 현황 비교 >

(단위 : 건)

구분	2022	2023	2024	2025
구조·구급증명서	8,550	9,310	9,003	8,116
구조·구급활동일지	19,165	23,410	25,495	26,802

※ '26. 1월 권익위 실태조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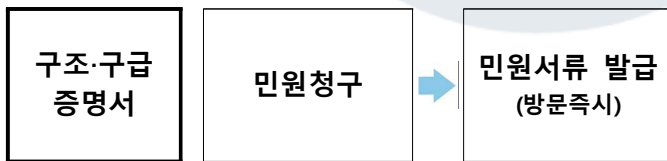


○ 민원인이 '증명서'만으로 증명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면, '활동일지'를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이중 민원 청구에 따른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 초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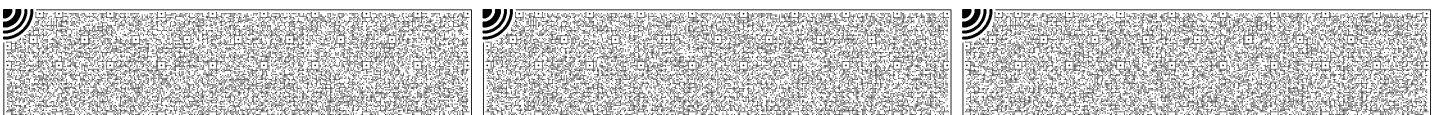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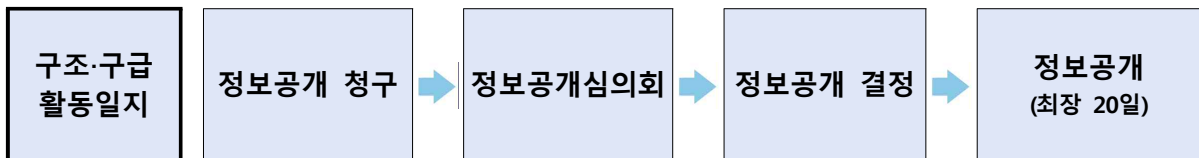
- 더구나, '활동일지'의 경우 민원서류 발급이 아닌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'정보공개 청구' 절차가 필요, 정보공개 결정 기간도 상당 소요

※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날부터 최장 20일 이내 결정·통지(연장 10일 포함)

<구조·구급증명서 및 활동일지 발급 절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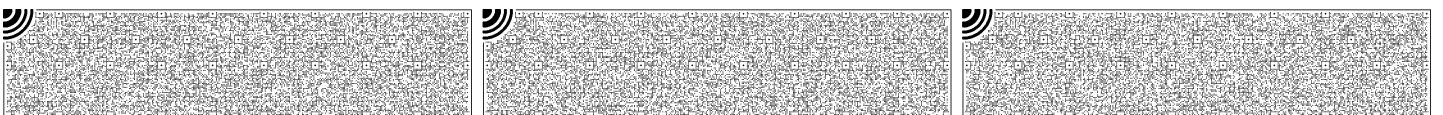


※ 세부정보 필요시 추가로 활동일지 정보공개 청구 필요 ↓



<관련 민원 사례>

- ▣ 구조·구급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서에 방문해야 하며, 구급활동일지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발급 받을 수 있어 불편함. 경찰민원포털의 경우 경찰민원관련 서류를 쉽게 온라인 발급 가능하나 소방민원포털은 소방시설공사, 화재안전조사와 같이 일부 민원 신고만 가능함. 구급활동일지 및 구조·구급증명서 발급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.(2025.3월 119콜센터 제안)
- ▣ 현행되는 119 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별지 제7 호 서식인 '구조·구급 증명 신청서'에는 '민원 24(www.minwon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' 라는 글귀가 있음. 그러나 이 말과 다르게, 현재 민원 24와 정부 24에서는 구조·구급 증명을 신청할 수 없음. 온라인으로 구조·구급 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음(2020.8월 국민신문고)



Ⅳ. 개선방안

1 구조·구급 증명 민원 처리 체계 일원화

□ 구조·구급증명서 발급 표준 업무규정 마련

- 일선 소방관서의 구조·구급 증명민원 처리(방문 또는 전자발급)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정, 전 기관 통일된 민원행정 대응
 - (발급대상) 본인의 신청인 범위, 관계별 입증서류 종류 및 확인 사항
 - (발급방식) 방문, 인터넷 등을 통한 발급 기준, 포함 내용, 대상 및 절차 등
 - (발급기관) 방문 민원에 따른 민원처리 소방관서 범위, 관할외 출동(활동) 건에 대한 발급 처리기준 등
 - (접수서류 관리) 접수대장 작성·관리, 본인의 발급에 따른 확인서류, 보존, 폐기 등에 관한 기준 등
- ※ (사례)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_병무청
 - ▶ 해당 증명서 발급을 위한 발급대상, 발급기관, 발급절차, 기재내용, 확인 및 날인사항, 유효기간 등을 표준화하여 규정, 통일된 증명서 발급민원 처리 지원

⇒ 관련 규정 제정

2 구조·구급증명서 전자발급 시스템 구축

□ 구조·구급증명서 전산시스템 이용 발급

- 본인(당사자)의 증명 발급 청구의 경우 '정부24'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

- (본인 발급) 전산시스템 및 기관 방문에 의한 민원처리 병행
- (본인의 발급) 기관 방문에 의한 민원처리

※ '정부24'외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도 '정부24'에서 '기관연계' 되도록 조치

3 구조·구급증명서 공개정보 강화

□ 기본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

○ 구조·구급증명서를 기존형식의 '기본형'과 활동일지의 세부정보가 담긴 '상세형'으로 구분하여 발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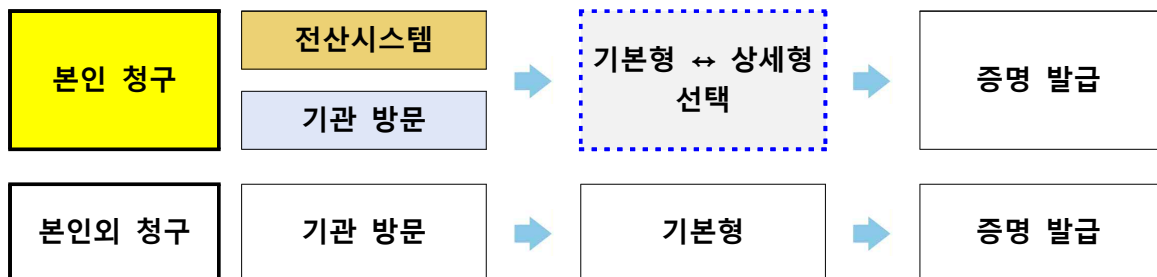
- 세부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원이 훨씬 더 많은 만큼(약 3배), 그동안 별도의 '정보공개 청구'에 의해 발급하던 '구조·구급활동일지' 내용을 담은 '상세형 증명서'를 마련, 국민이 선택 및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

※ (상세형 구조·구급증명서) 활동일지 내용을 증명서의 형태로 변환시킨 증명서

- ▶ 발급조건 : 본인 청구(본인외 청구 X)
- ▶ 발급방식 : '정부24 등 전산시스템' 또는 '소방관서 방문' 발급
- ▶ 발급내용 : 기존 정보공개 청구로 공개하는 '구조·구급활동일지 기록내용'을 준용하되, 필요시 대상자(본인) 이외*의 개인정보(성명 및 연락처) 등은 제외

* 신고자·보호자·접수자·병원관계자 정보, 현장활동 소방관 정보 등

<구조·구급증명서 발급 개선 절차>



⇒(②, ③번 공통) 관련법규 개정 및 '정부24' 등 전산시스템 연계·발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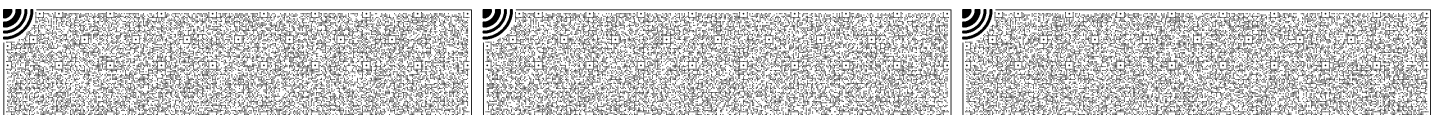


V. 조치사항

□ 대상기관 : 소방청

□ 조치사항 및 기한

구 분	조치사항	조치기한
<p>① 구조·구급 증명 민원 처리 체계 일원화</p>	<p>○ 구조·구급증명서 발급 표준 업무규정 마련 ⇒ 관련 규정 제정</p>	<p>'27. 3월</p>
<p>② 구조·구급증명서 전자발급 시스템 구축</p>	<p>○ 구조·구급증명서 전산시스템 이용 발급 ⇒ 관련법규 개정 및 정부24 등 전산시스템 연계·발급</p>	
<p>③ 구조·구급증명서 공개정보 강화</p>	<p>○ '기본형 증명서'와 '상세형 증명서'로 구분하여 발급 - (기본형 구조·구급증명서) 기존 증명서 - (상세형 구조·구급증명서) 활동일지 내용을 증명서의 형태로 변환시킨 증명서 ⇒ 관련법규 개정 및 정부24 등 전산시스템 연계·발급</p>	



붙임 **관련 법규**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12조의2(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·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(이하 “전자민원창구”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전자민원창구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·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.

제28조의2(전자증명서의 발급)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증명서(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사실이나 관계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발급하는 민원문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발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계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·고시한다.

전자정부법

제20조(전자정부 포털의 운영) ① 국가는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(이하 “전자정부 포털”이라 한다)을 구축·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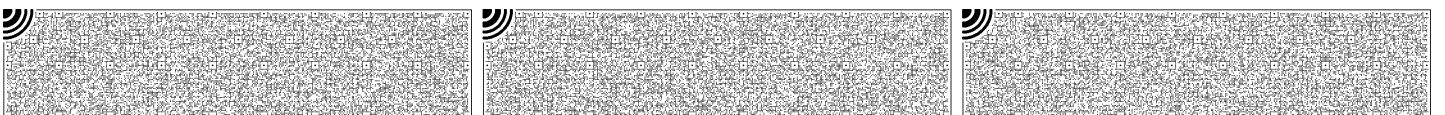
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

제16조(화재증명원의 발급)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에 필요한 사람이 화재를 증명하는 서류(이하 이 조에서 “화재증명원”이라 한다)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화재증명원의 발급신청 절차·방법·서식 및 기재사항, 온라인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9조(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증명원(이하 “화재증명원”이라



한다)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를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의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제시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신청인이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에 필요한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증명원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·관리해야 한다.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

제22조(구조·구급활동의 기록관리)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·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구조·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·보관 및 관리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7조(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) 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,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.

②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8조(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) ①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(이하 “구급활동일지”라 한다)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,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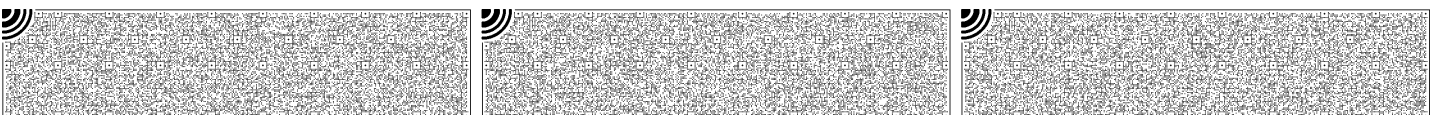
②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구급활동일지(제18조의2에 따라 이동단말기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환자를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고, 구급활동일지(이동단말기에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을 말한다) 1부를 그 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구급대원은 구급출동하여 심폐정지환자를 발견한 경우 또는 중증외상환자, 심혈관질환자 및 뇌혈관질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활동에 관한 세부상황표를 작성하고,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.

제19조(구조·구급증명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대나 구급대에 의한 구조·구급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구조·구급증명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인명구조,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(이하 “구조·구급자”라 한다)
2. 구조·구급자의 보호자
3.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

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·구급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련



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·구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1. 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)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 2.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3. 구조·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4. 그 밖에 구조·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- ③ 구조·구급자의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구조·구급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보호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6년 4월 6일

위원장 정 일 연

위원 한 삼 석

위원 조 소 영

위원 이 명 순

위원 홍 봉 주

위원 신 대 희

위원 최 진 영

위원 권 석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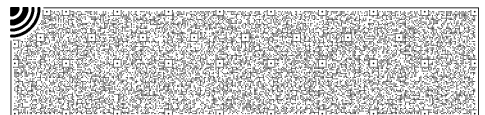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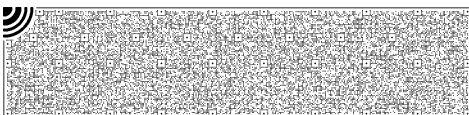
위원 최 명 규

위원 이 흥 주

위원 이 태 한

위원 김 바 올

위원 신 상 욱



정본입니다.

2026. 4. 6.

국 민 권 의 위 원

